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2
1.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	2
2.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

□ 개정안은 ①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조합 및 중앙회의 출자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그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부실자산 매입 업무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80조의3(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0조의3(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u>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현행	개정안
<신설>	<u>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u>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u> ③ <u>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u> 2. <u>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u> 3. <u>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u> 가. <u>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u> 나. <u>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u> 다. <u>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u> 4. <u>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u> 5. <u>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u> 6. <u>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u> 7. <u>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u> 8. <u>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u> 9. <u>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u>

현행	개정안
<신설>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신설>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금융기관은 연체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기관에 이를 매각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함.

- 참고로, 부실채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정¹⁾에 따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에만 매각할 수 있음.²⁾

□ 그동안 조합은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회수·관리하였으나, 2024년도에 연체율이 급증하여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동 개정안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를 개정하여 채권 양도 가능기관에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신용협동조합 연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출금	1,079,132	1,081,920	1,066,836	1,064,501	1,059,872	1,068,120
연체대출금	26,619	39,324	62,057	66,605	76,002	64,393
연체율	2.47%	3.63%	5.82%	6.26%	7.17%	6.03%

(자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이에 중앙회는 현행법 제78조제1항제9호³⁾를 근거로 부실채권 매입·추심회사 설립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항⁴⁾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금을 출자해 2024년 5월에 ‘KCU NPL 대부(주)’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음.

참고로, ‘KCU NPL 대부(주)’는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7천억원(자본금 1천억원, 차입금 6천억원) 중 3,289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함.

- 3)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대부업 등록을 한 ‘KCU NPL 대부(주)’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⁵⁾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기자본(1천억원)의 10배까지만 자산(최대 1조원)을 보유할 수 있어,⁶⁾ 2024년 말 기준 6.4조원이 넘는 조합의 부실채권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현행법상 조합은 타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없으므로 ‘KCU NPL 대부(주)’에 출자할 수 없고, 사실상 출자 가능기관은 중앙회뿐이어서 자본 조달에 한계가 나타남.

□ 이에 개정안은 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동법에 규정하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⁷⁾의 채권양도 가능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예⁸⁾와 같이 동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대부업 등록 없이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대부회사가 대출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7)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8) < 유사사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경우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의 채권양도 가능기관에 동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으로써 양도 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등을 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자산 한도와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법률」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적용 없이 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할 수 있게 하고, ② 개별 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산관리회사의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며, ③ 원활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예금자보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2002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음.⁹⁾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종전에 'MCI 대부'를 설치해 부실채권 관리업무를 하였으나, 대부업 한계 등으로 인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고, 2024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위한 출자자, 주요업무, 자금조달, 관리·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새마을금고법」과 유사함.¹⁰⁾

□ 개정안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자산 한도 규제 없이 적극적인 자

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현황

구분	세부 사항
출자구조	조합 : 중앙회 3 : 7 공동출자
주요사업	부실자산 매입, 부실자산 보전추심 등
조직현황 ^(23년말)	3본부 7부 및 23지사 / 직원 145명
재무현황 ^(23년말)	자산 1.94조원 / 부채 1.81조원 / 자본 0.13조원 / 당기순이익 112억원

(자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10)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의 「새마을금고법」과의 조문대비표 참조

본 조달(차입, 조합 출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개별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회수·관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한 조합이나 자금을 대여해 준 예금자보호기금¹¹⁾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고,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여력 확대로 인해 조합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관련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만약, 자산관리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 제80조의10제1항 및 제2항은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 차입기관으로서, 중앙회, 금융기관 및 예금자보호기금만을 규정하고 ‘조합’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을 자금 차입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11)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에 따라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개별 ‘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비교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둘째, 현행법 제3조제2항¹²⁾에 따르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도 해당 명칭이 사용되므로, 현행법 제3조제2항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2)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절 회계	제6절 회계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u>조합과 중앙회</u> 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u>조합 또는 중앙회</u> 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조합과 중앙회</u> 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u>조합 또는 중앙회</u> 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⑤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앙회</u> 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조합 또는</u>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 <u>조합, 중</u>

현행	개정안
<u>중앙회</u>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u>조합 또는 중앙회</u>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앙회</u>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u>조합 또는 중앙회</u>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u>조합 또는 중앙회</u>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앙회</u>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u>조합 또는 중앙회</u>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u>조합 또는 중앙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	<u>양회 및 관리회사</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③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④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 ----- ----- -----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u>----- ----- -----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조합 또는 중앙회</u>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앙회</u>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u>조합 또는 중앙회</u>에 대한 주의·경고 2. 3. (생략)	②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u>-----.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1. <u>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u>----- 2.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새로 설치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문의처
02)6788-5113

【참고자료】「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비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제80조의3(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u> (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u> (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